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적극행정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안 제11조, 제16조제3항·제4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 요건을 심의하여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제1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을 최대 45명까지로 확대하고, 매 회의 시 안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하며,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

다.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 신설(안 제14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정비(안 제15조)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특례 적용대상에 적극행정 유공자를 포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마.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및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리·감독 관할을 명확히 하고,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5. 27. ~ 07. 0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이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전단 중 “15명”을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적위원”을 “제4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를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지급 대상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및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감사원에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9조·제10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2. 제5조·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3. 제16조에 따른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

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하고, 제17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4.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9조·제10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2. 제5조·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3. 제16조에 따른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하고, 제17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4.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파견받은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특정직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영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이전의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u>적극행정 지원위원회</u>) 중 양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u>적극행정 지원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제13조에 따라 <u>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u> 3.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u>15명</u>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③ (생략) <u><신설></u>	제11조(<u>적극행정위원회</u>) ----- ----- ----- ----- <u>적극행정위원회</u> ----- -----. 1. (현행과 같음) 2. ----- <u>위원회</u> ----- ----- ----- 3. 4. (현행과 같음) 5. <u>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45명</u> ----- ----- ---. -----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② (생략)

이 경우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 제4항에 따른 구성원 -----

-----.

⑥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 제6항까지 -----

-----.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장 -----

-----.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
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
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
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
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
여금이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
등급 부여 또는 「공무원 성
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
0조제5항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
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 8. (생략)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

봉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
은 지급 대상인원에 포함하
지 아니할 수 있고,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을 부여
받은 공무원은 평가 대상인원
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및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 8.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생략)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②
(생략)

<신설>

<신설>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3

<신 설>

에 따른 면책 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감사원에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
용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
이라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9조·제10조를 제
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중앙행
정기관장의 장”은 “시·도교
육감”으로 본다.

2. 제5조·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2조를 각각 준용한
다.

3. 제16조에 따른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
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
조를 준용하고, 제17조에 따른

<신 설>

징계 등 면제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4.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9조·제10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2. 제5조·제13조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3. 제16조에 따른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
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
조를 준용하고, 제17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4.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
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
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
정 운영규정」 제17조를 준용
한다.

제23조(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
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① 「국
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
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
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파
견받은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
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 소

<u><신 설></u>	<u>속 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u> <u>제24조(준용) 특정직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을 준용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501